

## 결합건축협정서

•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총4쪽 중 제1쪽)

|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처리일자 | 처리기간 50일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|

### I. 결합건축 개요
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위 치                  |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지간 최단거리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용도지역(지구/구역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결 합 건 축<br>협 정 체 결 자 |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주소   |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 (법인, 외국인 등<br>의 경우 등록번호) |
|                      |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 (법인, 외국인 등<br>의 경우 등록번호) |
| 결 합 건 축<br>내 용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가 대지 | 나 대지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법정 용적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결합건축으로 조정되는 용적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건축가능 용적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최종 용적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유 효 기 간              | (최소 30년 이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위 반 시<br>제 재 사 항     | (결합건축 체결 후 동시재건축 불이행으로<br>인한 행정 제재에 대한 대응사항 등) |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 타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
「건축법」 제77조의1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체결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제출합니다.

체결자 (가) (서명 또는 인)

체결자 (나)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|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|---|----------|
| 처 리 절 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|   |          |
| 신청서 작성<br>신청인                        | ➔ | 접 수 | ➔ | 검 토<br>(건축위원회 심의<br>(도시계획위원회 심의)) | ➔ | 결 정 | ➔ | 신청인에게 통지 |
| 처 리 기 관 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) | 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|   |          |

II. 결합건축 현황도

|      | 대지면적(㎡) | 건축면적(㎡) | 건폐율(%) | 연면적<br>합계(㎡) | 연면적합계(㎡)<br>(용적률 산정용) | 용적률(%)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가 대지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나 대지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
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
| 도면의 종류 | 축척 1 : | 작성자 (서명 또는 인)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1. 배치도[대지의 경계, 대지의 조경면적, 「건축법」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, 건축선(「건축법」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), 건축물의 배치현황,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,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]
2.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, 조경면적,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,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(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)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.

Ⅲ.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

□ 가 대지

|    |      |
|----|------|
| 주소 | 특이사항 |
|----|------|

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
| 도면의 종류 | 축척 1 : | 작성자 (서명 또는 인)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- 1. 배치도[대지의 경계, 대지의 조경면적, 「건축법」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, 건축선(「건축법」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), 건축물의 배치현황,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,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]
- 2.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, 조경면적,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,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(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)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.

□ 나 대지

|    |      |
|----|------|
| 주소 | 특이사항 |
|----|------|

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
| 도면의 종류 | 축척 1 : | 작성자 (서명 또는 인)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- 1. 배치도[대지의 경계, 대지의 조경면적, 「건축법」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, 건축선(「건축법」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), 건축물의 배치현황,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,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]
- 2.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, 조경면적,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,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(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)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.